

도시계획시설(공원)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심 사 보 고 서

2008. 1. 23.
복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8. 1. 10.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08. 1. 11.
- 다. 상정 및 심사일자

- 제133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(2008. 1. 23) 상정, 심사 원안채택

2. 제안설명요지 (제안설명지 : 김성보 도시계획과장)

가. 제안이유

- 시민불편해소에 기여하고, 2020.7.1부터 적용되는 장기미집행시설의 자동실효제도에 대비하고자 미집행시설에 대한 존치·폐지 판단 및 집행계획 등을 포함한 서울시 재정비계획안에 의거 폐지 대상인 성산동 산11-59일대 도시계획시설(학교)을 성미산근린공원으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마포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함.

나. 주요요지

○ 대상지

- 위 치 : 마포구 성산동 산11-59 일대 [첨부#1 참조]
- 면 적 : 당초 51,301㎡ , 변경10,200㎡(증), 총면적 61,501㎡

○ 도시계획사항

- 자연녹지지역, 제1종일반주거지역, 도시계획시설(학교)

○ 기초조사 결과

- 서울시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재정비계획에 따라 폐지되는 학교시설은 인접에 성미산근린공원이 있으며, 현재 토지이용실태는 성산골프 연습장 및 배드민트 연습장으로 이용하고 있음

○ 환경성 검토결과

- 특이사항 없음
- 공원조성으로 인해 현재 토지이용보다 환경성이 우수함

○ 자원 및 조달 방안

- 총 사업비 : 7,100(백만원)
- 토지매입비 : 5,100백만원료(50만원/㎡ × 10,200㎡)
- 조 성 비 : 약 2,000백만원(㎡/20만원 × 10,200㎡)
- 예산확보방안
 - 개인소유의 9필지 2,639㎡(보상비13억원)에 대하는 보상 요구 시 우선기반 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에서 지급하고 한양학원 소유부지는 서울시 예산으로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하여 조성

다. 입안내용

○ 공 원

| 구분 | 도면 표시 번호 | 시설명 | 시설의세분 | 위치 | 면적(㎡) | | | 최초결정일 | 비고 |
|----|----------|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| | | | | 기정 | 변경 | 변경후 | | |
| 계 | | | | | 51,301 | 증)10,200 | 61,501 | | |
| 폐지 | - | 공원 | 어린이공원 | 마포구 성산동 39-18 | 501 | 감)501 | 0 | 용지시정 ('79.1.12) | |
| 변경 | 1 | 공원 | 근린공원 | 마포구 성신동 11-59일대 | 50,800 | 증)10,701 | 61,501 | 건고 제2181호 ('66.2.7) | |

○ 체육시설

| 구분 | 도면 표시 번호 | 시설명 | 시설의세분 | 위치 | 면적(m ²) | | | 최초결정일 | 비고 |
|----|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| | | | | 기정 | 변경 | 변경후 | | |
| 계 | | | | | 21,485 | 감)21,485 | 0 | | |
| 폐지 | 6 | 체육시설 | | 마포구 성산동 산11-31 | 21,485 | 감)21,485 | 0 | 서고 93-45 (93.2.23) | |

○ 학교

| 구분 | 도면 표시 번호 | 시설명 | 시설의세분 | 위치 | 면적(m ²) | | | 최초결정일 | 비고 |
|----|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| | | | | 기정 | 변경 | 변경후 | | |
| 계 | | | | | 10,200 | 증)10,020 | 20,220 | | |
| 폐지 | 10 | 학교 | 고등학교 | 마포구 성산동 산11-1 | 10,200 | 감)10,200 | 0 | 서고 제50호 (82.2.3) | |
| 신설 | 10 | 학교 | 초·중·고 교 | 마포구 성산동 산11-31 | - | 증)20,220 | 20,220 | 급회 | |

3. 검토보고의 요지(한두호 전문위원)

- 본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것임.
- 성미산은 마포구 성산동 산 11-59일대로 전체 면적은 124,828㎡이며 공원 50,800㎡, 체육시설 21,485㎡, 학교 10,200㎡, 임야 42,343㎡로 구성되어 있음.
- 성미산근린공원은 1966년 2월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결정된바 있고 이번에 편입되는 부지는 성산동 산11-1외 1필지로 면적은 10,701㎡가 되겠음.
- 추진경위를 보면 2007년 10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계획 입안하여 2007년 11월 12일부터 11월 26일까지 도시관리계획 안을 열람·공고 하였으나, 접수된 의견은 없음.

- 주요입안 내용은 성미산근린공원 편입대상 부지는 성산동 산11-1외 1필지이며 면적은 10,701㎡로, 학교시설 10,200㎡와 어린이공원시설 501㎡를 폐지하고 공원시설로 변경하는 것이며, 학교법인 흥익학원 소유인 성산동 산11-31 체육시설 21,485㎡은 학교시설로 20,220㎡, 나머지는 소유자가 문화아카데미시설로 계획하고 있음.
- 편입대상지는 성미산 근린공원에 인접하고 있으며, 현재 토지이용실태는 성산골프연습장 및 배드민턴연습장등으로 이용하고 있으며, 개인소유의 9필지 2,639㎡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보상 요구시 우선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에서 지급하고 한양학원 소유부지 7,320㎡는 서울시에 소요예산을 요구하여 연차적으로 매입하여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.
- 본건은 성미산 근린공원과 연계되어 녹지량 확충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다소 개선은 되겠지만, 성미산 종합관리 방안에서 볼 때, 구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연차적으로 매입하여 성미산 전체를 공원화하는 도시계획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, 4개 단체 300여명의 동호회 회원의 장소인 배드민턴장은 새로 건립 하거나 대체 장소를 확보한 후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채택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 타 : 없음 .

[첨부 #1] 도시관리계획(공원) 변경 결정(안) 도

